

2018년도 기술본부 일반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목적

기술본부 소관부서 추진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업무오류 및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시정·개선함으로써 업무효율성을 제고

2. 감사대상 : 기술본부 소관

3. 감사범위 : 2016.1월 ~ 2018.2월까지 수행업무 전반

4. 감사중점사항

- 가. 업무수행시 사규 준수여부 및 불합리한 관행 유무
- 나. 공사·용역 수행 및 관리의 적법성·합리성
- 다.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의 객관성·투명성
- 라. 물품구매, 검수, 운용 등 자산관리업무의 적정성
- 마. 고객서비스 및 열차안전운행 지장요소 유무 등

5. 감사기간 및 인원

- 가. 감사기간 : 2018. 3. 5. ~ 3. 30.(기간중 20일)
- 나. 감사인원 : 감사실장 외 4명

II. 감사결과

1. 지적사항 총괄

행정상 조치(건)								재정상 조치	
계	개선	주의	경고	통보	시정	교육	현지시정	계	회 수
18	4	2	1	6	3	1	1	1,210천원	879천원 331천원

2. 지적사항 세부내역

의견 번호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1	<p>■ 수의계약 운용개선</p> <p>가.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의 분할발주 우려에 대비한 제도 보완</p> <p>긴급성, 공사 난이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별도 수의계약으로 유지보수를 해야 하는 사항은 제외하더라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건에 대하여는 유지보수 개소를 사전에 조사하거나 사전조사가 어려울 경우 일정기간 취합을 통하여 일괄적인 계약을 추진함으로써 공개적인 수의견적제도를 이용하는 방향으로 개선</p> <p>아울러, 수의계약업체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수개의 특정업체 운영으로는 일감몰아주기 등의 특혜시비가 있을 개연성이 있으므로 더 많은 수의계약업체를 발굴하여 보다 다양한 업체에 기회 부여</p> <p>나. 물품구매 계약시 통합발주 필요</p> <p>각부서에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연, 반기 등으로 소요물품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량구매하는 것이 필요</p> <p>또한 계약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요물품들에 대하여는 단가계약을 추진하여 예산절감과 행정절차 간소화룰 도모</p> <p>다. 부문예산 분리에 따른 팀 간 통합발주 미흡사항 개선</p>	<p>부서별 운영여건과 업무환경을 고려하여 개선사항을 검토한 후 수의계약 운용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개선계획에 따라 수의계약 진행(발주)</p>	개선	

연월 일련 번호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각 부서별 보수의 긴급성, 편의성 등 업무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부서간 업무협조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최소한 부서단위 내에서라도 통합하여 발주</p> <p>라. 수의계약 “관련사유” 기록유지</p> <p>외부감사나 민원 등에 대비하여 공사 내부적으로 이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관련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이 되도록 수의계약 사유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p> <p>수의계약 발주시 품의서 등 내부계획문서에 기재하여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건별로 목록화하여 계약대장에 첨부</p>			
2	<p>■ 철도시설의 보수·개량공사 후 합동점검 시행기준 정립</p> <p>철도안전관리규정 제197조 제1항에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철도시설의 보수개량공사를 시행한 후에는 분야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철도시설”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이 없어 관련부서에서 교체 및 보수·개량공사 완료 후 합동점검 시행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p>	<p>철도안전관리규정 제19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합동점검 시행의 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열차운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철도시설”에 대한 기준을 정립</p>	개선	
3	<p>■ 철도종사자 음주측정 기록방식 전산화</p> <p>일부부서에서 음주측정 기록부 서식이 철도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서식과 다르고, 음주측정 시간에 대한 기록이 없었으며, 음</p>	<p>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측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음주측정 기록방식을 전산화하여 운영</p>	개선	

연번 의견 항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주측정 기록을 수정하는 등 음주측정 및 기록관리에 대한 처리가 미흡하였음</p> <p>이러한 서식상이, 기록누락, 기록수정 등은 음주측정기록부를 수기 작성함에 따라 부서별 임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으로 음주측정 결과 및 음주측정 기록부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움</p>			
4	<p>■ 역사 LED 디밍제어시스템 점검기준 마련</p> <p>2015년 ◎◎팀에서는 「국비지원 지역에 너지 절약사업」에 지원해 선정됨으로써 보조금을 확보(국비 90백만원, 시비 45백만원)하였고, 5개 역사에 2,680여개의 디밍제어시스템을 설치함</p> <p>그런데 설치완료 후 역사 디밍제어시스템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주기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업무직 직원의 역사 전등·전열기구 상태에 대한 순회점검 내용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디밍제어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p>	<p>보조금을 지급받아 설치완료한 디밍제어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주기적 점검기준을 마련하고 점검사항 이력관리</p>	개선	
5	<p>■ 부서 예산관리 소홀</p> <p>○○팀에서는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팀으로 조정하여 집행이 예정되어 있던 “◇◇기지 창고 설치공사”예산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해당예산(시설비 및 부대비<건물>)을 감액하였으며,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사회 승인을 얻은 후 예비비 사용을 승인</p>	<p>추후 동일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내부 통제절차 강화 등 예산업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p>	주의	

연번 의견 항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팀에서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 유류 구입”관련 차량비(매출) 예산을 감액요구하였으나, 해당예산의 집행관리를 소홀히 하여 감액요구한 예산보다 530원을 과다집행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8년 1월 초과된 예산금액만큼 예산과목을 변경</p> <p>◎◎팀에서는 2017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기타 복리후생비(매출)에 대한 지출예산총액 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 집행액보다 과다하게 해당예산의 감액하여 편성된 예산보다 200원이 초과집행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안전화 구입건에 대한 회계결의서상 예산관리팀을 ◎◎팀에서 □□팀으로 변경함으로써 결산서상 초과집행이 없도록 사후조치</p>			
6	<p>■ 공사 및 용역 관련서류 개인정보 관리 소홀 공사·용역 발주부서에서는 착공(착수) 및 준공시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등 신분확인을 위한 각종 서류를 제출받으면서 개인별 주민등록 뒷번호 7자리가 삭제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받고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상세히 기록된 서류를 보관하고 있으며,</p> <p>◎◎팀에서는 계약관리 및 대금집행을 위하여 발주부서로부터 착공(착수)계, 준공계를 제출받으면서 개인별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않고 발주부서가 제출한 서류일체를 여과없이 보관하고 있음</p>	<p>현재 보관중인 공사 또는 용역 관련 서류에 대한 확인후 개인별 주민번호 뒷자리를 모두 삭제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p>	주의	

이력번호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조치	재정조치
7	<p>■ 전동차 차륜삭정 및 이력관리 미흡</p> <p>2017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업무지시에 의한 11회의 차륜삭정을 시행하면서 정기검사 결과에 해당편성 전동차 차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한 기록이 없음에도 주행중 소음발생 등의 이유로 차륜삭정기준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없이 삭정을 지시 시행하는 등 차륜 삭정절차를 임의 운용하고 있으며, 차륜삭정후 결과를 전동차관리시스템 차륜삭정기록표에 기록하면서 차륜의 삭정사유를 소음발생 등으로 개략적으로만 기록하고 차륜삭정기준이 되는 찰상정도, 흠 또는 박리의 정도 등은 기록하지 않는 등 차륜삭정 이력을 미흡하게 관리하고 있음</p>	<p>차륜이상 발생시 정기검사 결과에 따른 차륜관리기준 부합여부 검토절차를 거쳐 삭정하는 등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차륜점검 및 삭정결과를 전동차 유지 보수업무의 기본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차륜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p>	경고	
8	<p>■ 재고자산(저장품) 수량의 적정수준 재설정</p> <p>부서별 재고자산(저장품)의 품목별 수량이 물품적정재고관리 시스템에서 설정한 재고수준(안전재고,최대재고)과 달리 과부족상태로 운용되는 품목이 안전재고 미만 1,035종, 최대재고 초과 3,332종으로 나타남</p> <p>2007년 시스템 구축이후 적정재고 산정방식을 현행화하지 않음에 따라 현재의 품목별 재고수준의 신뢰성이 미흡하며, 각 부서에서도 현행 적정재고관리시스템의 재고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물품취득 및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있음</p>	<p>연도별 가중치 적용 등을 통해 재고자산(저장품)수량의 재고수준을 재설정하여 적정재고관리시스템에 반영하고, 향후 물품수급관리계획이 적정재고관리시스템 기준 내에서 수립될 수 있도록 관리</p>	통보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9	<p>■ 승강설비 점검보수용역 점검보수수준 확인방법 보완</p> <p>현행 기성검사시 점검보수수준의 확인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고장처리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정산기준이 되는 고장 접수 및 도착, 처리완료 시각을 용역직원이 작성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승강기 고장시 용역직원의 출동에서 처리완료까지 점검보수수준을 객관적으로 증빙하기 어려움</p>	<p>용역금액 정산시 점검보수수준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전산화할 것</p>	통보	
10	<p>■ 우수 분임연구 선정과제에 대한 사업반영 추진</p> <p>2016년도 분임연구 「1호선 1구간 무정정전원장치(UPS) 원격감시시스템 구축」 수행결과 직원자체 기술력으로 구축가능하고, 구축시 상시감시 가능으로 신속한 장애원인 분석 및 복구시간 단축의 효과와 1구간 전체역사 설치기준 29,700천원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여 “장려상”을 수상함</p> <p>그런데 현재까지 부품구매 비용소요 등의 사유로 미설치 역사에 대한 확대설치를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 연구결과로 도출된 통신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의 상시감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p>	<p>1구간 무정전전원장치 원격시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통신장비 유지관리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단계적 설치계획 수립 후 추진</p>	통보	
11	<p>■ 전동차 공기호흡기 충전주기 및 방법 변경</p> <p>2016년 6월 이후 국민안전처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공기호흡기 무료충전 금지 이후 ◎◎팀은 정기검사시 누기된 공기호흡기에 대해서</p>	<p>전동차 공기호흡기에 대하여 매월 실시하는 정기점검을 통하여 충전가스압이 규정치 이하일 때 충전하고, 충전은 반드시 허가받은 업체에 의뢰</p>	통보	

연월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만 순천소재 허가받은 업체에서 충전하고 있는 반면, ☆☆☆팀의 경우 과거 무료충전시 준용해 왔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에 따라 모든 공기호흡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시행하고 있음</p> <p>그간 ☆☆☆팀에서 공기호흡기 재충전 주기의 기준으로 준용해왔던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은 우리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며, 허가받은 업체에서 충전을 한다면 내부공기에 대한 품질을 보장 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새로운 공기를 재충전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p>			
12	<p>■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및 관리 실시</p> <p>철도안전관리규정 제159조(중점관리대상자의 관리)에 따라 관리책임자는 중점관리대상자에게 월 1회 이상 면담교육을 시행하고 그 실적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개인의 품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엄밀히 조사 후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전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p> <p>2018년 신규직원 채용으로 인해 관련규정을 적용받는 팀들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해당팀에서는 상기규정의 개정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따라 철도안전관리규정 제159조에 따른 신규 업무자에 대한 중점관리대상자 지정 및 관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p>	<p>신규직원에 대하여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고 입사후 현재 업무에 적응정도, 주변 동료와의 관계, 가정환경, 건강 등에 대한 개인적 면담실시 및 기록관리할 것</p>	통보	

연월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13	<p>■ 도면관리시스템의 도면자료 현행화 철저</p> <p>「도면관리시스템」에 1호선 1구간의 도면은 전 부서에서 등재가 잘 이루어져 있으나, 1호선 2구간 도면에 대해 전체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전자 도면 관리에 소홀하였음이 발견</p> <p>추후 건설될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도면은 전자화하여 도면관리시스템으로 자동 이관 될 수 있도록 반영 예정이며,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1호선 도면관리시스템을 구축목적에 부합하게 직원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된 2구간 도면을 조속히 등재하여 현행화 할 것이 요구됨</p>	<p>도면관리시스템에 미등재된 2구간 도면을 빠짐없이 등재하여 사내 모든 PC에서 필요시 언제든지 관계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p>	통보	
14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확인소홀</p> <p>2016년 12월 「☆☆기지 창고 설치공사」에 대한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안전관리비 총 1,747,192원 중 일부 금액을 근로자의 안전의 목적이 아닌 공사장 경계 등을 위하여 'PE휀스 8조'설치에 사용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감액조정 하지 않았으며,</p> <p>2017년 11월 「에스컬레이터 ○○○장치 설치공사」에 대한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계상하여 제출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감액조정 없이 준공처리</p>	<p>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정산오류로 인해 초과 지급된 공사금액 879,270원에 대하여 회수조치</p>	시정	회수

연월 연번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15	<p>■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업무 부적정</p> <p>2016년 11월 「2016년 △△유지보수공사」에 대한 준공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정산하면서 계약상대가 보험료 사용에 대한 내역을 제출하지 않아 전액감액처리 하였으나 이에 따른 일반 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의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고 정산 하였으며,</p> <p>2017년 12월 「2017년 하반기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대한 준공시 보험료를 정산하면서 증빙서류에 따른 작업자의 실제 투입일자를 확인하여 일할정산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정산내역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공처리</p>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오류로 인해 초과 지급된 공사금액 331,255원에 대하여 회수조치	시정	회수
16	<p>■ 물품계약건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 소홀</p> <p>2016년 「□□역 취약 선로전환기 교체」와 2017년 「○○역 취약 선로전환기 교체」 등 2건의 물품계약에 대하여 성질상 하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하자보증 2년을 설정하여 계약체결 하였음에도, 2016년과 2017년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시 상기 물품 계약건에 대한 하자검사계획을 누락하고 현재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음</p>	지방계약법 제70조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계약건에 대하여 하자검사 조속히 실시	시정	
17	<p>■ 공사준공시 폐기물처리비 사용실적 확인 소홀</p> <p>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폐기물처리비는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p>	향후 자체 공사발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직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실시	교육	

연월	내 용	조 치 사 항	처분사항	
			행정 조치	재정 조치
	<p>그런데 2017년 4월 「주공장 작업장 바닥 보수공사」에 대한 준공시 계약상대자가 건설폐기물처리비 565,440원에 대한 사용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준공처리 하였음. 단. 금회 감사기간 중 계약상대자로부터 폐기물처리비 사용실적을 제출받았으며 적정 사용되었음을 확인함</p>			
18	<p>■ 수입계약 관리 미흡</p> <p>가. 인지세 납부누락</p> <p>「인지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하는 「국가계약법」 등에 근거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계약건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함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재정수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해당 계약문서 2건에 대한 인지세 납부를 누락</p> <p>나. 공인인증서 관리 소홀</p> <p>범용공인인증서를 업무상 필요에 따라 타 부서로 대여하면서 대여내역관리, 대여승인 절차 이행, 대여 후 부당사용방지를 위한 회수 등 공인인증서 대여와 관련된 내부통제절차 미시행</p> <p>또한 매년 공인인증서를 갱신하여 발급받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로는 기록관리를 하지 않고 있을 뿐만아니라 비밀번호도 2014년 이후 변경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고 있으며,</p> <p>2017년 조직개편으로 팀이 신설된 이후 ☆☆팀으로부터 수입사업의 계약체결 등을 위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이관받아 사용하면서, 인증서에 대한 취급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발급대장도 미관리</p>	<p>감사기간내 관련팀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 해당 계약건에 대한 인지세 납부조치 및 공인인증서 대여 및 발급대장 기록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p>	현지시정	